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67
----------	-----

2020. 12. 18.(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0년 10월 30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11월 3일

라. 상정일자 : 2020년 12월 9일

-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균형건설국장 김인)

가. 제안이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위원회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

(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 서완석)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물류단지개발을 방지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 개정에 따라 기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던 실수요 검증을 지정권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은 가능함.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 및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는 위원회의 개최, 의결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제7조 및 제8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음.

○ 입법예고('20. 9. 18.~'20. 10. 8.)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 개정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던 실수요 검증을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 따라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물류단지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실수요 검증 신청을 받아 제2조 각 호에 대한 심의·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개최 하되, 도지사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실수요 검증의 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2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따른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부의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②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거나 사적 이익에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① 일반물류단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지정한다.

1. 국가정책사업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하거나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2. 제1호 외의 경우 : 시·도지사

② ~ ⑤ <생략>

제22조의7(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①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수요검증 대상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에 각각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둔다.

충청북도 실수요검증위원회 조례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 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가 실시하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외부 전문가 참여

2. 비용 발생 요인

- 외부 전문가의 안전 심의를 위한 서면검토, 회의개최에 따른 수당, 여비 등 실비 지급 수요 발생

3. 관련조문 : 안 제2조(기능), 제6조(위원회 운영), 제12조(수당)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에 따른 지급수요 규모는 분기별 1회 실시계획에 따라 연간 4회 예상

- 위원 20명 전원 안검 참여 기준으로 1명당 150천원(안검심사 50천원, 회의참석 100천원) 소요

※ 150천원(1명) × 20명 × 4회/년 = 12,000천원

나. 추계결과 : '21년부터 향후 5년간 총 60,000천원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정책기획관실 위원회 운영수당을 활용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출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외부전문가 참여수당 등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6. 작성자 : 교통정책과장